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9060007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09.12.2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11.08.03.]

[http://www.pdpm.co.kr]
[ke53240@yahoo.co.kr]

[파-닭에파무쳐]

정 보 공 개 서

[파-닭에파무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에스엠푸드(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소[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503]
가맹본부 대표전화번호[053-811-9339]
가맹본부 대표팩스번호[053-811-9338]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별첨서류

[별첨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별첨2] 가맹금 예치신청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tc.go.kr/data/hwp/20080306_103723.hwp)
(http://www.ftc.go.kr/new_contents/info/info_021m.php?lawcode=09)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에스엠푸드 주식회사	파-닭에파무쳐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503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9.10.28	2009.11.2	이광언	053-811-9339	053-811-9338
	법인등록번호	170111-0388977	사업자등록번호	502-86-0228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이사	이광언 에스엠푸드(주)	파-닭에파무쳐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503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2009.10.28~현재	이광언	053-811-9339	053-811-9338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임원(이사)	신상호 에스엠푸드(주)	파-닭에파무쳐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503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2009.10.28~현재	이광언	053-811-9339	053-811-9338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임원(감사)	윤홍열 에스엠푸드(주)	파-닭에파무쳐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503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2009.10.28~현재	이광언	053-811-9339	053-811-933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 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 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해당사항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파-닭에파무쳐]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파-닭에파무쳐	
상 호	파-닭에파무쳐 OO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1950690000
상표(서비스표)		상표 등록번호: 4008057200000
광 고	상동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없음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08년	-	-	-	-	-	-
2009년	82,139	39,831	42,307	0	-7,589	-7,692
2010년	1,503,630	1,434,062	69,567	2,783,442	23,963	27,259

※ 당사의 재무상황은 별첨(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매출액	상한	하한
파-닭에파무쳐	2008년	-	-	-
	2009년	0	-	-
	2010년	2,783,442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광언	대표이사	2009. 10. 28~현재	에스엠푸드(주) 대표	사업 총괄
	신상호	이사	2009. 10. 28~현재	에스엠푸드(주) 이사	사업 총괄
	윤홍열	감사	2009. 10. 28~현재	에스엠푸드(주) 감사	업무 감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 해당사항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10년 12월 31일	3	-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파-닭에파무쳐]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해당사항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파-닭에파무쳐 (서비스표권)	계약에 따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할 권리	출원일자: 2008.11.06. 등록일자: 2010.03.12.	출원번호: 4120080028984	이광언	2020.03.12.
			등록번호: 4101950690000		
파-닭에파무쳐 (상표권)	계약에 따라 제품 등을 판매하고 대가를 수령할 권리	출원일자: 2008.11.06. 등록일자: 2009.11.09.	출원번호: 4020080052612	이광언	2019.11.09.
			등록번호: 400805720000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파-닭에파무쳐] 가맹사업 현황

1. [파-닭에파무쳐] 를 시작한 날: 2008년 1월 4일

2. [파-닭에파무쳐]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스엠푸드 주식회사	파-닭에파무쳐	이광언	2009. 10. 28~현재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503

3.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파-닭에파무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08.12.31.			2009.12.31.			2010.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2	2	-	35	35	-	69	69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8	8	-
대구	1	1	-	20	20	-	27	27	-
인천	-	-	-	2	2	-	2	2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1	1	-
울산	-	-	-	1	1	-	4	4	-
경기	-	-	-	1	1	-	1	1	-
강원	-	-	-	-	-	-	1	1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1	1	-
전북	-	-	-	3	3	-	11	11	-
전남	-	-	-	-	-	-	-	-	-
경북	1	1	-	8	8	-	13	13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4. 최근 3년간 [파-닭에파무쳐]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08	0	2	-	-	-	2
2009	2	33	-	-	-	35
2010	35	34	-	-	-	69

5. [파-닭에파무쳐]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파-닭에파무쳐]외에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6.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당사는 [파-닭에파무쳐] 가맹점사업자가 2010년에 올린 평균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각 가맹점사업자의 POS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10년 말 가맹점 수	2010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전체	69	해당없음	-	-	-
서울	-	해당없음	-	-	-
부산	8	-	-	-	-
대구	27	-	-	-	-
인천	2	-	-	-	5곳미만
광주	-	해당없음	-	-	-
대전	1	-	-	-	5곳미만
울산	4	-	-	-	5곳미만
경기	1	-	-	-	5곳미만
강원	1	-	-	-	5곳미만
충북	-	해당없음	-	-	-
충남	1	-	-	-	5곳미만
전북	11	-	-	-	-
전남	-	해당없음	-	-	-
경북	13	-	-	-	-
경남	-	해당없음	-	-	-
제주	-	해당없음	-	-	-

7.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파-닭에파무쳐] 가맹점을 관리하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가 없습니다.

8.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10년]에 [파-닭에파무쳐]와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7,007	27,007	-	
광고	소계		27,007	27,007	-	
	TV	-	-	-	-	-
	라디오	2010.04.~12.	27,007	27,007	-	한국방송광고공사 대행
	인터넷	-	-	-	-	-

9.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대구수성우체국	금융영업실(조은경)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8-2	053-757-1250

귀하는 [8]쪽에 기재된 가맹금을 [별첨2]의 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작성된 예치신청서를 지참하시고,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우체국]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0.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파-닭에파무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20,900]천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상하수도 및 외부 공사, 철거, 냉난방시설, 소방공사, 전기/가스 증설, 인허가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3,300]			
가맹비	3,300	계약 체결일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	개점 전: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정보제공 및 노하우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개점 후: 반환하지 않음

2) 당사는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3,3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3,300
가맹비	3,300(부가세 포함)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0]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 포함/33m (10평)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비고
총계		[17,600]		
인테리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와 계약한 업체	33m ² : 5,500	인테리어 계약시: 50%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 30% 공사 완공일: 잔금 20%	3.3m ² 늘어날 때마다: 550천원씩 추가부담
	가맹점사업자 직접 시공시	감리비용: 3.3m ² 당 110	가맹계약 체결시: 완납	
주방기기/기물/의.탁자 포함	세화주방	5,500	물품 계약시: 50% 개점 1일 전까지: 50%	
간판	모든프린터	2,200	간판 계약시: 50% 개점 1일 전까지: 50%	전면간판 1개, 선팅 등/기본 외 추가시 별도
POS	테크노	1,100	POS설치 완료시: 완납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2,200	물품 공급 후 7일 이내 결제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가맹본부	1,100	계약시: 50% 개점 1일 전까지: 50%	매장 초도비품, 소모품, 오픈행사, 홍보물 등
별도 비용	상.하수도 외부공사 및 철거, 냉.난방시설, 소방공사, 전기/가스 증설, 인.허가 등의 비용은 별도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점 입점 위치 확정

※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가 조언을 할 수 있으나,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20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파-닭에파무쳐]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 내역		공급방법	공급업체
주방집기	냉장고	추후 별도 계약	세화주방
	냉동고		
	전기그릴		
	가스튀김기		
	전자레인지		
	스텐싱크대		
	스텐조리대		
	소독기		
그릇종류, 주방기물잡화류	추후 별도 계약	세화주방	
간판	전면간판	추후 별도 계약	모든프린터
	선팅		
인테리어	실내공사	추후 별도 계약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와 계약한 업체
POS	POS	추후 별도 계약	테크노시스템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50% / N	광고개시 전	광고개시 전	광고 시행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N=총가맹점사업자 수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실시 전	교육실시 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교육 필요시 지급

2)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QSC관리	매장 내 품질, 서비스, 청결 등 점검	수시(방문시)	문의: (053-811-9339)
회계처리	상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 감독	가맹본부의 요청시	문의: (053-811-9339)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파-닭에파무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은 없습니다.

※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귀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당사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간판 시안과 당사만의 고유 외장 인테리어 등의 영업표지를 영업장 및 기타 영업 설비로부터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의 부담입니다.
- ② 귀하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당사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된 상품의 완전물에 한하여 당사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당사는 출고가격으로 상환합니다.
- ③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계약 종결 후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파-닭에파무쳐]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품목	규격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비고			
부동산	해당없음							
설비	인테리어	실내장식	권유	가맹본부				
	간판	전면간판	권유	모든프린터				
		선팅						
	POS	시스템 설치	권유	테크노시스템				
	냉장고	1260*800*1900(mm)	권유	세화주방				
	냉동고	517 ℓ						
	전기그릴	2.5kw						
	가스튀김기	520*610*850(mm)						
	전자레인지	489*275*393(mm)						
	스텐싱크대	1200*600*750(mm)						
	스텐조리대	1500*850*750(mm)						
	소독기	500*400*510(mm)						
	그릇종류	-				권유	세화주방	
	주방기물잡화류	-						
상품	포장박스	로고 인쇄	강제	가맹본부	매일 발주 후 익일 정산			
	나무젓가락	로고 인쇄						
원·부재료	순살정육(닭)	1kg						
	양념소스	10kg						
	간장소스	10kg						
	간장마늘소스	1.8L						
	허브갈릭파우더	20kg						
	일반전용파우더	20kg						
	불갈비(닭)	2kg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당사는 [파-닭에파무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3.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파-닭에파무쳐]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주선하지 않습니다.

4.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간장마늘치킨+후라이드치킨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특성에 따라	1회 위반: 구두 경고	
양념치킨+후라이드치킨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양념치킨+간장마늘치킨		3회 이상 위반: 상품공급중단	
양념치킨+참숯바베큐		또는 계약 해지	

간장마늘치킨+ 참숯바베큐	당사와 협의하여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간장마늘치킨+ 양념치킨+ 참숯바베큐			
참소주			
참이슬			
하이트맥주			
카스맥주			
호프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원)	단위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간장마늘치킨+후라이드치킨	14,000	1000g	당사의 공문을 통하여 별도로 공지를 합니다.	2010년 4월 기준
양념치킨+후라이드치킨	14,000	1000g		
양념치킨+간장마늘치킨	15,000	1000g		
양념치킨+참숯바베큐	15,000	900g		
간장마늘치킨+참숯바베큐	15,000	900g		
간장마늘치킨+양념치킨+참숯바베큐	20,000	1,500g		
소주	3,000	360ml		
맥주	3,000	500ml		
호프	2,500	500cc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보호 제도 유무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영업지역 제도 운영 여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여부
○	X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변경 가능 여부	변경 사유
인구, 행정구역, 거리, 상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가 미리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그 기준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을 선택합니다.	가맹계약서에 지도로 표시하여 첨부	가능	상권 변화(기관 입주, 아파트 입주 등), 고객 선호 변화, 경쟁 브랜드 입점 등 영업지역의 개발이나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한 경우

3)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당사는 영업지역을 재조정하기에 앞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영업지역 내에 당사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지역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고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나 수익에 별다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당사의 직권으로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파-닭에파무쳐]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파-닭에파무쳐]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의 가맹계약 기간: 2년
- 재계약 또는 갱신시 계약기간: 2년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9]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파·닭에파무쳐]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34]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1)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제36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가맹본주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가맹점의 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공급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부터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주문한 상품의 대금결제를 1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지 사유(2)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6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 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 [계약 해지 사유(2)]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 [제36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양당사자의 상호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제44조 제2항

당사가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수정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게 되는 예상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가맹점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이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동이가 없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귀하가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1개월 전에 당사의 서면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승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

사표시를 합니다. 단,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통지합니다.

- ③ 당사의 서면승인을 받은 귀하의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이 인정됩니다. 단, 귀하의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가맹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귀하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당사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⑤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가 양도를 승인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음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용은 상속인이 부담함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하에 대리경영을 시킬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업무위탁	불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파-닭에파무쳐의 직영점 및 각 가맹점사업자의 거점지역 내에서] 귀하가 [파-닭에파무쳐]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닭고기 및 주류 등을 가공,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053-811-9339)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파-닭에파무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당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일 10시간 이상	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개점하여야 함	문의: (053-811-933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자율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당사 (053-811-9339)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파-닭에파무쳐]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고 활동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부담 외 전액	광고비의50% / 가맹점수=1개 가맹점 부담금	계약서에 의함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광고 행사)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가맹점 개별 광고 행사		가맹점 부담			가맹점 단독 광고 행사

※ 판촉 활동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판촉 전체 행사	가맹점부담 외 전액	판촉비의50% / 가맹점수 =1개 가맹점 부담금	계약서에 의함	명절 등 이벤트 판촉 행사 (전국 판촉 행사)
가맹점 개별 판촉 행사	가맹점 부담			가맹점 단독 판촉 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광고 디자인(전단지, 책자, 자석전단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 판촉활동을 할 경우 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당사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33m (10평)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20,9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즉시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5	-
가맹계약 체결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정보공개서에 대하여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난 후에 가맹계약 체결, 이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하루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함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	-
가맹금 예치	- 가맹비: 3,300 위 금액을 우체국에 가맹금 예치	가맹계약 체결 후 즉시	3,300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점포계약	- 입지선정 및 상권조사 - 점포계약	10일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3일	-
실내외 공사착수 및 각종설비 설치	- 인테리어 공사	15일	5,500
	- 간판제작		2,200
	- POS설치		1,100
	- 주방기기/집기 설치		5,500
교육 실시	- 개점 전 점포운영교육 및 위생교육 ※ 실내외 공사 기간에 동시 진행	10일	-
초도물품 입고	- 초도상품(각종 식자재 등)	2일	2,200
	- 초도비품 및 소모품 등		1,100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해결 노력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에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02-3445-9898,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파-닭에파무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실습교육 집단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가맹점 개점 3일 전까지 이수	필수 교육
수시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집단강의	교육실시 전	필요시
특별 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실습교육	교육실시 전	필요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파-닭에파무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3일	-	최초 계약시 필수적으로 이수
수시 교육	1일 이상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50%	필요시 이수
특별 교육	교육내용에 따라 다름	가맹점사업자 100% 부담	요청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개점 3일 전까지 개점 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서 제11조에 따라 개점이 불가합니다.

※ 당사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로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53-811-9339)**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대 차 대 조 표

제 1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에스앤피푸드(주)

(단위 : 원)

과목	계(당)기 금 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23,995,681
(1) 당 좌 자 산		21,987,681
현 금		1,444,838
보 통 예 금		16,482,258
선 급 비 용		1,018,040
부 가 세 대 금		3,042,545
(2) 재 고 자 산		2,008,000
원 재 료		2,008,000
II. 비 유 동 자 산		58,143,909
(1) 투 자 자 산		0
(2) 유 형 자 산		35,143,909
기 계 장 치	5,88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73,033	5,806,967
차 량 운 반 구	20,513,853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541,920	18,971,433
비 품	10,7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34,491	10,365,509
(3) 무 형 자 산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3,000,000
임 차 보 증 금		23,000,000
자 산 총 계		82,139,590
부 채		
I. 유 동 부 채		39,831,640
외 상 매 입 금		8,000
가 수 금		23,240,000
단 기 차 입 금		16,583,640
II. 비 유 동 부 채		0
부 채 총 계		39,831,640
자 본		
I. 자 본 금		50,000,000
II. 자 본 잉 여 금		0
III. 자 본 조 정		0
IV.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0
V. 결 산 금		7,692,050
미 처 리 결 산 금		7,692,050
(당 기 순 손 실)		
당기 : 7,692,050 원		
전기 : 0 원		
자 본 총 계		42,307,950



대 차 대 조 표

제 1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에스엠푸드(주)

(단위 : 원)

과 목	계 기(당)기 금 액
부 채 및 자본 총 계	82,139,590



손익계산서

제 1(당)기 2009년 10 월 28일부터 2009년 12 월 31일까지

회사명 : 에스엠푸드(주)

(단위 : 원)

과목	제 1 (당)기 금 액	
I. 매출액		0
II. 매출원가		4,485,317
제품매출원가		4,485,317
기초재품재고액	0	
당기제품제조원가	4,485,317	
기말재품재고액	0	
III. 매출총손실		4,485,317
IV. 판매비와관리비		3,103,851
세금과공과금	412,000	
감가상각비	334,491	
지급인차료	300,000	
수수료	59,900	
보험료	116,060	
소모품비	458,900	
지급수수료	1,422,500	
V. 영업손실		7,589,168
VI. 영업외수익		3,076
이자수익	3,076	
VII. 영업외비용		105,958
이자비용	105,958	
VIII. 법인세차감전손실		7,692,050
IX. 법인세등		0
X. 당기순손실		7,692,050
XI. 주당손실		0



재 무 상 태 표

제 2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제 1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에스엠푸드(주)

(단위 : 원)

과 목	제 2(당)기		제 1(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589,480,115		23,995,681	
(1) 당 좌 자 산	402,963,451		21,987,681	
업 외 적 금	431,587		1,444,838	
보 통 예 금	122,316,819		16,482,258	
정 기 예 금	19,030,000		0	
외 상 매 출 금	197,784,345		0	
소 모 금	40,938,411		0	
선 금 비 용	5,687,786		1,018,040	
보 가 세 더 금	16,838,353		3,042,545	
선 납 세 금	26,170		0	
(2) 재 고 자 산	186,516,664		2,008,000	
상 품 재 료	107,023,144		0	
원 재 료	79,493,520		2,008,000	
II. 비 유 동 자 산	914,150,074		58,143,909	
(1) 투 자 자 산	0		0	
(2) 유 형 자 산	885,800,386		35,143,909	
토 지	338,673,874		0	
건 축	360,707,436		0	
광 가 상 각 누 계 액	3,005,895	357,701,541	5,880,000	
기 계 잡 치	5,880,000		73,033	
광 가 상 각 누 계 액	926,573	4,953,427	73,033	5,806,957
채 량 운 반 구	57,743,331		20,513,353	
라 가 상 각 누 계 액	20,152,389	37,590,942	1,541,920	18,971,433
비 준	156,813,947		10,700,000	
광 가 상 각 누 계 액	9,833,345	146,880,602	334,491	10,365,509
(3) 무 형 자 산	0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28,349,688		23,000,000	
미 차 보 증 금	0		23,000,000	
기 타 보 증 금	28,349,688		0	
자 산 총 계	1,503,630,189		82,139,590	
부 채				
I. 유 동 부 채	1,074,082,679		39,831,640	
외 상 매 입 금	102,804,780		8,000	
미 지 금	122,142,567		0	
가 수 금	186,240,000		23,240,000	
선 수 금	282,600,000		0	
탄 기 차 입 금	363,101,120		16,583,640	
미 치 금 비 용	17,174,212		0	
II. 비 유 동 부 채	380,000,000		0	

재무상태표

제 2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제 1기 200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에스엠프드(주)

(단위 : 원)

과 목	제 2(당)기		제 1(전)기	
	금	액	금	액
장 기 자 입 금		380,000,000		0
부 채 총 계		1,434,062,879		39,831,640
자 본				
I. 자 본 금		50,000,000		50,000,000
자 본 조 성		50,000,000		50,000,000
II. 자 본 잉 여 금		0		0
III. 자 본 조 성		0		0
IV.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0		0
V. 이 익 잉 여 금		19,567,510		-7,692,050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19,567,510		-7,692,050
(당 기 손 이 익)				
당기 : 27,269,560 원				
전기 : -7,692,050 원				
자 본 총 계		69,567,510		42,307,95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503,630,189		82,139,590

손익계산서

제 2(당)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1(전)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에스엠두드(주)

(단위 : 원)

과목	제 2 (당)기 금 액	제 1 (전)기 금 액	
I. 매출액	2,783,442,852		0
상품 매출액	1,448,671,444	0	
제품 매출액	1,300,225,950	0	
가맹수입금	34,545,458	0	
II. 매출원가	2,518,362,174		4,485,317
상품 매출원가	1,351,367,125	0	0
기초상품재고액	0	0	
당기상품매입액	1,458,395,269	0	
기말상품재고액	107,028,144	0	
제품 매출원가	1,166,995,049		4,485,317
기초제품재고액	0	0	
당기제품제조원가	1,166,995,049	4,485,317	
기말제품재고액	0	0	
III. 매출총이익	265,080,678		-4,485,317
IV. 판매와관리비	241,117,299		3,103,851
임원급여	60,000,000	0	
직원급여	41,049,888	0	
복리후생비	14,071,900	0	
여비교통비	4,895,233	0	
적대비	12,263,840	0	
공신비	496,590	0	
세과공과금	2,109,990	412,000	
감가상각비	9,598,854	334,491	
지급이자료	1,210,000	300,000	
수수료	415,000	59,900	
보험료	3,197,514	116,060	
차량유지비	20,858,690	0	
인발비	9,631,640	0	
교육훈련비	776,300	0	
도서인쇄비	634,384	0	
사무용품비	535,988	0	
사무품비	7,118,964	458,900	
지급수수료	12,597,828	1,422,500	
부관료	2,216,661	0	
광고선전비	34,721,511	0	
리수익	2,716,526	0	
V. 영업이익	23,963,379		-7,589,168
VI. 영업외수익	19,571,856		3,076

손익계산서

제 2(당)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1(전)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에스엠푸드(주)

(단위 : 원)

과목	제 2 (당)기		제 1 (전)기	
	금	액	금	액
이 자 수 익	155,301		3,076	
국 고 보 조 금	18,700,000		0	
잠 이 익	716,355		0	
VII. 영업 외 비용		15,773,205		105,958
이 자 비 용	15,640,177		105,958	
난 기 매 매 증권처분손실	61,914		0	
잠 손 실	71,114		0	
VIII. 법인세차감전이익		27,781,830		-7,692,050
IX. 법인세 등		502,270		0
법 인 세 등	502,270		0	
X. 당기순이익		27,259,560		-7,692,050
XI. 주당이익		0		0

[별첨 2]

가맹금 예치증서			
예치번호			
예치신청인 (가맹점명)			
수령인 (영업표지)			
예치기관명		계좌번호	
예치금액	₩	(금 원 정)	
예치이율	연 %	관리수수료	₩
<p>「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발행부서 지점장 시 구 동 예치기관 (인) 대표이사 . </p>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본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희망자 보관용)

본인은 [파-닭에파무쳐]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2.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날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3.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①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③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④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⑦ 교육.훈련프로그램
4.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5.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_____ (인)	수령자: _____ (인) 주민등록번호: _____
-----------------	---------------------------------

------(절취선)-----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본부 보관용)

본인은 [파-닭에파무쳐]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2.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날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3.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①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③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④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⑦ 교육.훈련프로그램
4.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5.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_____ (인)	수령자: _____ (인) 주민등록번호: _____
-----------------	---------------------------------